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3. 30 선고 2022가단686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3. 2. 2.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 가.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5.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0. 접수 제25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9. 접수 제2741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보증약정체결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D'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C은 2016. 8. 22.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8. 22.로 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F, 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C과 원고는 제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22. 8. 24.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2) C은 2017. 7.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금액을 2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20. 7. 31.로 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 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C과 원고는 제2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22. 7. 29.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3) 그 후 C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E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2022. 5. 초경 원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면서 제1, 제2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대출금 원금 및 이자의 대위변제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9. 1. 중소기업은행에 193,254,881원(= 원금 190,000,000원 + 이자 3,254,881원)을, 2022. 9. 6. E은행에 96,680,797원(= 원금 95,000,000원 + 이자 1,680,797원)을 각 지급하였다.

4) 2022. 9. 14.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액수는,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96,721,397원(= 대위변제금 96,680,797원 + 추가보증료 40,600원)과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93,546,901원(= 대위변제금 193,254,881원 + 추가보증료 292,020원) 및 대지급금 680,060원 등 합계 290,948,358원이다.

나. C의 처분행위

- 1) C은 2022. 5.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1)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0. 접수 제25619호로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그 후 C은 2022. 5. 19.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9. 접수 제27414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자산 상태

-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이 각 체결된 2022. 5.경 C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2022. 5.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02,500,000원 정도였고, 그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1,250,000원이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각 체결된 2022. 5.경 C에게는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원금 95,000,000원 및 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원금 190,000,000원 및 이자) 외에도 중소기업은행, H카드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다.
-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각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각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이나 이 사건 증여계약 각 체결일 무렵 이미 C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9. 1. 중소기업은행에, 2022. 9. 6. E은행에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C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각 체결 당시 C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채무자 C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 A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위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각 해당하고, 나아가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A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A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J'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및 펄스크랩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 8.경부터 'D'라는 비철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C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폐자재를 구입하여 판매를 해 왔다. 그런데 C은 2018. 8. 29.경부터 2021. 10. 2. 사이에 피고 A로부터 6차례에 걸쳐 선금을 지급받고도 2021. 8.경부터는 피고 A에게 폐자재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A가 C에게 이미 지급된 선금 중 남은 금액 73,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C은 피고 A에게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선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또한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C의 채무 초과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A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A는 2022. 10. 19.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서증으로 을 제1 내지 6호증을 접수하였으나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을 제1 내지 6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0. 접수 제25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9. 접수 제2741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별지

1)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의 1/2 지분도 함께 담보로 제공되었다.